###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20 발의연월일: 2024. 11. 13.

발 의 자: 박덕흠 · 엄태영 · 박성민

조지연・강승규・김선교

고동진 • 정희용 • 김상욱

김예지 · 이종배 · 김정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공중방역수의 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근거 규정이 없고,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하는 주체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당 지급에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하 게 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불성실하게 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복무기간 연장 조치 등을 하고 있으나, 타 직종의 대체 복무자와 같이 수당 제한 조치를 추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정책 수립 시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등 처우 수준을 정

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보수 현황을 조사하고,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된 기관에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 수당을 제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 법률 제 호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중방역수의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을 "보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기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②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보수 등) ①공중방역수의	제16조(보수 등) ① <u>농림축산식품</u>
<u>사</u> 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	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
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	
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u>보수를</u>
<u>&lt;신 설&gt;</u>	②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u>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및 직무</u>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
	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
	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감액
	<u>할 수 있다.</u>
<u>&lt;신 설&gt;</u>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
	치받은 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
	비 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
	<u>시할 수 있다.</u>
<u>&lt;신 설&gt;</u>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②제1항에 따른 보수의 <u>기준 등</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가축 방역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가축 방역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u>⑤</u> ----- <u>八定</u>--